

- 서울시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관련 -

대금e바로와 지방공기업회계시스템(LOBAS) 설명

I 서울시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

○ 관련법령

- 지방공기업법 16조 제1항 (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)
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16조 제1항
(1일 하수처리능력 1만톤 이상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(기업회계)로 의무전환)
-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

○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

- 공무원 조직 내에서 운영하며, 일반회계에서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
- 지방 공기업 예산·회계시스템(LOBAS)를 통한 회계관리, 공사대금지급

II 공사대금 지급 관련 달라지는 점

○ 대금e바로 내 계약정보 직접등록 필요

- 대금e바로가 계약정보(변경계약 포함)와 지급정보(지급일, 지급액 등)를 수신하지 못함으로 공사관리관의 계약체결 후 계약정보 직접등록 필요
· 메뉴(대금e바로) : '계약/계좌' 메뉴 - '계약' 메뉴 - 원도계약등록

○ 그 외 달라지는 점은 없으며, 기존대로 대금e바로를 통해서 건설대금 지급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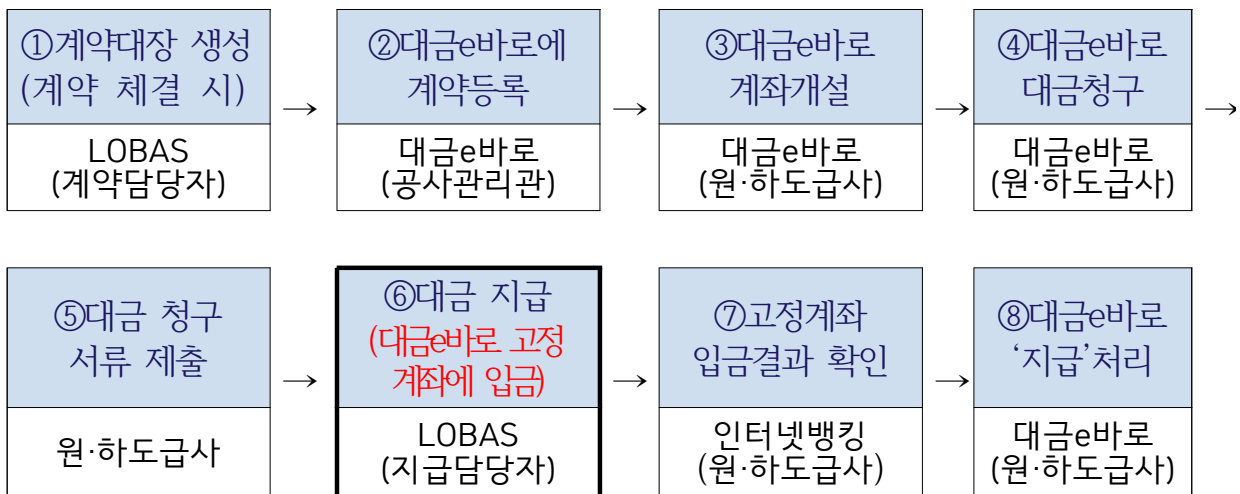
- 대금e바로 내 기성금 청구, 공사감독관 승인
- 공사대금 총액을 대금e바로 고정계좌에 입금(로바스시스템 내)
- 청구내역대로 대금e바로에서 구분지급(원·하도급몫, 장비/자재/노무비)



〈 대금e바로 내 신규 원도계약 등록 메뉴 〉

III 대금지급 사용 절차

○ LOBAS 활용 대상공사의 대금e바로를 통한 대금지급 절차



IV LOBAS 계약정보의 대금e바로 수신 계획

- 신규계약 체결 시 LOBAS 내 계약정보를 대금e바로가 수신하여 계약을 자동생성하도록 '18년 내 연계망 신규구현 예정
- LOBAS에서 제공하는 표준 연계모듈 활용